

5. 제3자이의의 소

가. 서 설

(1) 의 의

제3자 이의의 소라 함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한다(민집법 제48조). 이 소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점에서 청구이의의 소와 구별된다.

제3자이의의 소의 성질에 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구하는 형성의 소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여기서 제3자란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본소를 제기하더라도 강제집행은 당연히 정지되는 것이 아니고 잠정처분신청(민집법 제46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정지와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집법 제48조 제3항).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이의사유

(가) 개 설

청구의 원인에는 이의의 원인인 집행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발생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소의 목적은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은 제3자를 구제하는데 있으므로, 그 이의사유도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실무에서도 제3자가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의사유로 가장 많이 주장된다.

본소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제3자의 모든 권리 및 재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권의 종류나 집행의 대상을 가리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금전채권집행이건, 비금전채권집행이건, 본집행이건, 가집행이건, 보전집행이건, 유체동산이건, 부동산이건, 집행기관이 집행관이건, 집행법원이건 묻지 아니한다. 본소에 있어서도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와의 계약 관계에 의거하여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도 집행에 의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으므로 그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의 이익의 소의 이익원인이 될 수 있다.⁴³¹⁾

한편 제3자의 이익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대항 여부는 그 권리의 취득과 집행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권리가 집행 당시에 이미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집행 후에 취득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권리자가 이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자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의 이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⁴³²⁾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서는 이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⁴³³⁾ 등기를 마친 소유권자라 하더라도 그 등기가 집행채권자의 가압류등기 후에 되었거나,⁴³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⁴³⁵⁾는 원칙으로 이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그 소유권취득을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⁴³⁶⁾

(나) 제3자의 이익의 소의 원인이 있다고 한 사례

㉠ 무효의 가압류 결정에 기한 가압류집행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제3자의 이익의 소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가압류결정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으나, 피고의 가압류신청이 사망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사망자 명의의 그 가압류결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무효의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집행에 대해서는 그 집행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도 그 집행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취득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제3자의 이익의 소에 의하여 위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⁴³⁷⁾

431)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2381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16576 판결

432)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6744 판결,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884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494 판결 등

433)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223 판결

434) 대법원 1964. 7. 22. 선고 64다119 판결, 대법원 1965. 2. 23. 선고 64다1659 판결

435) 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다216 판결,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527 판결

436) 대법원 1988. 9. 27. 선고 다카2267 판결,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884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14470 판결

437)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884 판결

㉠ 제3자이의의 소는 등기청구권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등기청구권의 귀속자로서 자신의 등기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로 인하여 장애를 받는 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이 자기에게 귀속함을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⁴³⁸⁾

㉡ 집행목적물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이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은 소유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이면 족하다. 따라서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와의 계약관계에 의거하여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도 집행에 의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으므로 그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다.⁴³⁹⁾

(다)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없다고 한 사례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종중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⁴⁴⁰⁾

㉣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하여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하는바, 강제집행 개시결정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집행채권이 변제 기타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도

438)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52995 판결

439)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2381 판결

440)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의하여 채무명의의 집행력이 배제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개시 결정은 취소 될 수 없고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동안에는 집행채권이 변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소유권을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⁴⁴¹⁾

㉔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의 제3자이의의 소의 소의 이익 유무

제3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⁴⁴²⁾

㉕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과 승계집행문에 의하여 피고의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가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가 제3자이의의 소인지 여부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고, 제3자란 채무명의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 이외의 자를 말하며, 승계집행문으로 인하여 피고의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가 그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는 제3자이의의 소라 할 수 없다.⁴⁴³⁾

(3) 소제기의 시기

본소는 강제집행 개시 후 종료 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⁴⁴⁴⁾ 따라서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물건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민집법 제257조, 제258조)에 있어서는 강제집행의 개시전이라도 강제집행이 우려 있을 때에는 본소의 제기가 인정된다.

나. 청구취지의 기재례

제3자이의의 소의 청구취지는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명시하고, 한편으로 청구 이의의 소에서와 같이 집행의 정지·취소 등을 구하는 잠정처분을 신청한다.

441)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527 판결

44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443)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0883 판결

444)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 제3자이의의 소(유체동산가압류집행)

피고가 박○○에 대한 ○○지방법원 20○○. ○. ○.자 20○○카단4891 유체동산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20○○. ○. ○. 별지 목록 제1기재 물건들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동산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지위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4.8.26. 선고 93다44739 판결)

㊦ 제3자이의의 소(유체동산강제집행)

피고 김○○ 소외 서○○에 대한 ○○지방법원 20○○. ○. ○. 선고 20○○가소72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 8. 14. 별지 목록 제1기재 기계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과 피고 안○○이 같은 소외인에 대한 ○○지방법원 20○○. ○. ○. 선고 20○○카단24544 유체동산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같은 해 6. 20. 같은 목록 제1 내지 4기재 각 기계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각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제3자이의의 소(유체동산강제집행)

피고가 소외 이○○에 대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20○○. ○. ○. 작성한 20○○년 증서 제1353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 7. 4.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의 제3자이의의 소의 소의 이익 유무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익을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②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절차는 종료하고 배당절차만 남아 있는 경우, 제3자이의의 소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물건에 대한 매각절차는 종료되었으나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경매목적물의 경락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영수한 매득금은 경매목적물의 대상물로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자가 그 대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제3자이의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7.10.10. 선고 96다49049 판결)

㉠ 제3자이의의 소(채권강제집행)

피고가 고○○에 대한 ○○합동법률사무소가 20○○. ○. ○. 작성한 20○○년 증서 제864호, 같은 날 작성 20○○년 증서 제866, 868호, 같은 날 작성 20○○년 증서 제867호의 각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제3자이의의 소가 강제집행 종료 후 제기되거나 또는 소 제기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 소의 이익의 존부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 제3자이의의 소(채권강제집행)

피고가 채무자 소의 ○○산업주식회사, 제3채무자 소의 ○○종합제철주식회사로 된 ○○지방법원 20○○. ○. ○.자 20○○카단3033호 채권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20○○. 10. 16.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의 허용 여부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이 제3자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으로서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㉔ 제3자이의의 소(부동산강제집행)

피고들의 박○○에 대한 ○○지방법원 20○○. ○. ○ 선고 20○○가합123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특정물 인도청구 등의 집행에 있어서, 집행개시가 없더라도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특정물 인도청구 등의 집행에 있어서는, 채무명의 자체로서 그 집행의 대상이 일정하고 특정되어 있으며, 더욱이 이에 대한 집행은 개시되자마자 바로 종료되거나 단시간 내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록 집행이 개시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인천지법 19960903. 선고 96가합10009 판결 ; 확정)

㉕ 제3자이의의 소(부동산강제집행)

피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1. 15. 접수 제23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2008. 5. 1. 별지 제2목록을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 예컨대 공장저당 실행시 제3자가 당해 집행목적물이 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의 기재례임.

㉖ 제3자이의의 소(부동산강제집행)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지방법원 2013카합9255호 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3. 11.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 및 같은 법원 2013차1517호 수표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4. 6. 17.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집행 개시 후에 집행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 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대항 여부는 그 권리의 취득과 집행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권리가 집행 당시에 이미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집행 후에 취득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권리가 이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자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압류이후의 소유권 취득자가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압류집행이 형식적으로는 채권 확보를 위한 집행절차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그 집행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집행 후 본집행으로 이행하기 전에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가압류집행에 터 잡은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14470 판결)

㊥ 제3자이의의 소(예비적병합, 부동산가압류집행과 압류집행)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김○○이 피고 최○○을 채무자,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한 ○○지방법원 90카 16176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사건과 같은 법원 92타기1747호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신청사건의 각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과 압류집행은 이를 각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 최○○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20.자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하여 채권압류명령에 제3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진실한 채권자라고 주장하여 그 채권의 귀속을 다투는 자는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집행의 목적인 채권의 채무자라는 집행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하여 채권압류명령에 제3채무자로 표시된 데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1993.2.3. 92가합12387)

㊥ 제3자이의의 소(부동산가압류집행)

피고가 소외 서울 ○○구 상계 제5구역 제5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 89카8172호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별지 목록 제1, 2기재 각 상가에 대하여 한 각 가압류집행은 이를 모두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과 승계집행문에 의하여 피고의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가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가 제3자이의의 소인지 여부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고, 제3자란 채무명의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 이외의 자를 말하며, 승계집행문으로 인하여 피고의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가 그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는 제3자이의의 소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 10883 판결)

[참조판례] 가압류 이후의 소유권 취득자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압류 후의 소유권취득자는 그 가압류에 터잡아 한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무명의의 허위, 가장 여부를 다룰 적격이 없는 것이나, 그 집행 후에 취득한 권리라 할지라도 특별히 권리가 이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494 판결)

☐ 제3자이의의 소(건설기계강제집행)

피고 신용○○이 소외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지방법원 2000카합1410 건설기계가압류 결정 정본에 기하여, 피고 주식회사 한강이 위 ○○산업에 대한 ○○지방법원 2000카합2710 건설기계가압류 결정 정본에 기하여 각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제10 중기에 대하여 한, 피고 주식회사 강산이 위 ○○산업에 대한 ○○지방법원 2000카합41 건설기계가압류 결정 정본에 기하여, 피고 주식회사 장남이 위 ○○산업에 대한 ○○지방법원 2000카합71 건설기계가압류 결정 정본에 기하여 각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제10 건설기계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3자이의의 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집행)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1,765분의 6.3 지분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 중 2017.6분의 7.2 지분에 관한 소외 이○○의 소외 ○○시장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 피고 남○○이 ○○지방법원 2004카단10487호 사건의, (나) 피고 김○○이 같은 법원 2004카단10660호 사건의, (다) 피고 허○○이 같은 법원 2004카단10661호 사건의, (라) 피고 박○○이 같은 법원 2004카단10662호 사건의, 각 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참조판례] 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으로 인하여 진정한 등기청구권의 귀속자인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의 등기청구권 행사에 장애를 받는 경우,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3자이의의 소는 등기청구권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등기청구권의 귀속자로서 자신의 등기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로 인하여 장애를 받는 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이 자기에게 귀속함을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52995 판결)

㊦ 제3자이의의 소(부동산가처분집행)

피고가 소외 김○○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 2012카13926호 부동산가처분결정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2. 11. 26. 접수 제54032호로서 한 가처분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자가 그 후에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로부터 위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고 이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위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게 되므로 위 가처분권자는 위 가처분이전에 경료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자 및 다시 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남부지원 1987.5.14. 선고 87가합289 판결)

㊦ 제3자이의의 소(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

피고가 소외 김○○에 대한 ○○지방법원 2009카1234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2010. 1. 13. 별지 목록 건물에 대하여 한 점유이전금지의 가처분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3자이의의 소(부동산가압류집행)

피고 김○명이 소외 유○준에 대한 ○○지방법원 78카4051호 부동산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시 ○○동 175-8 대 992㎡와 같은 시 ○○동 344-1 대 1,220㎡에 대하여 한, 피고 ○○주식회사가 위 유○준에 대한 위 ○○지원 78카168호 부동산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위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한, 피고 조○회가 위 유○준에 대한 같은 법원 78카169호 부동산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위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각 가압류집행을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제3자이의의 소(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

피고가 소외 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3자이의의 소(대체집행에 대한)

피고가 소외 심○○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 2010가단517호 건물철거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1. 10. 9.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3자이의의 소(예비적병합, 주식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주위적 청구취지)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소외 ○○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지방법원 85타2287호 주식압류명령 결정정본에 기하여 2005. 7. 26. 별지 제1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지방법원 ○○지원 소속 집행관 소외 이○○이 위 주식압류명령결정 정본에 기하여 2005. 7. 26.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주식에 대하여 한 동산압류집행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3자이의의 소

피고가 소외 최○기에 대한 ○○지방법원 2016. 12. 27.자 2016카단122217호 부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6. 12.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94187호로 한 가압류 집행을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계약해제 전 그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가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는 그 가압류에 의하여 당해 목적물에 대하

여 잠정적으로 그 권리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이나 종국적으로는 이를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피보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는 위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 공2000상, 385)

㊥ 제3자이의의 소(인낙조서정본, 판결정본에 기한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피고 이○연이 소외 ○○제약주식회사(구 상호 ○○제약주식회사)에 대한 ○○지방법원 2008가단8234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인낙조서정본에 기하여 2009. 8. 24. 별지 목록 2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피고 정○근이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법원 2009가합 2561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같은 날 별지 목록 3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각 강제집행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제3자이의의 소(자동차)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에 대한 ○○지방법원 2008카합4878호 자동차가압류 사건의 결정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한 가압류 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구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차량의 경우, 그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는지 여부

특정 물건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게 남겨두고 시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하는 방식을 통하여 담보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시설대여(리스)의 특성과 시설대여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구 시설대여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의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고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의3 제1항, 제13조의4, 자동차관리법 제6조, 제8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18조의 각 조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차량의 시설대여의 경우에도 대여 차량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유보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다만 현실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행정상의 의무와 사고발생시의 손해배상책임은 시설대여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 편의를 위하여 차량등록을 소유자인 시설대여회사 아닌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구 시설대여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3조의2에 의하여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판결)

㊦ 제3자이의의 소(준설선)

피고가 소외 ○○○○개발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 2007가합2598호 약속어음금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준설선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1] 향진추진기가 없어서 선박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선에 대한물권 양도의 효력발생요건(=인도)

향진추진기가 없어서 선박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선에 대하여 관할 해운관청에 해운항만청 훈령인 부선등록사무처리요령에 의하여 작성·비치되어 있는 부선등록원부는 부선소유자의 의뢰를 받아 그 부선에 관한 소유권을 등록받아 놓은 것에 불과하고 부선등록원부에의 등록만으로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등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선등록원부에의 등록을 선박에 관한 등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것이고, 선박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선에 대하여는 민법 제188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체동산인 그 부선을 인도하여야 물권 양도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부선에 대한 변경등록이 있었다 하여 그로써 동산 물권변동의 요건인 인도에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동산의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동산의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회관념상 목적물에 대한 양도인의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의 지배로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인바, 현실의 인도가 있었다고 하려면 양도인의 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양수인은 목적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적으로 확고하게 취득하여야 하고, 양도인은 동산에 대한 점유를 완전히 종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602 판결, 공1999하, 1478)

㊦ 제3자이의의 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피고가 소외 위○량에 대한 ○○지방법원 2005가합17002 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1] 한국토지공사가 작성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기입한 일자가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토지공사가 작성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기입한 일자는 한국토지공사법 제4조 등에 비추어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로 볼 수 있다.

[2] 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으로 인하여 진정한 등기청구권의 귀속자인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의 등기청구권 행사에 장애를 받는 경우,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3자이의의 소는 등기청구권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등기청구권의 귀속자로서 자신의 등기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로 인하여 장애를 받는 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이 자기에게 귀속함을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52995 판결, 공1999하,1368)

㊦ 제3자이의의 소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에이비씨에 대한 ○○지방법원 ○○부지원 2012카합542호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처분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하여 2012. 10. 16. ○○ 스크류 콤프레샤 1세트(모델 R1234250WN)에 대하여 한 가처분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계약의 법적 성질과 그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소위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4807 판결, 공1996하, 2358)

다. 제3자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잠정처분)

㊦ 강제집행정지(잠정처분)신청(판결의 경우)

피신청인의 신청외 차○○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 2009가합2457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위 당사자간의 귀원 2009가합65478호 제3자이의의 소의 본안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참조판례] ① 민사소송법 제714조의 가처분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의 가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②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발하기 위한 요건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발하려면 그 발령법원에 같은조 제1항의 제3자 이의소송이 계속중임을 요하는 것이고, 이러한 집행정지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는 이는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서 특별항고이유가 된다.(대법원

1986.5.30.자 86그76 결정)

☐ 강제집행정지(잠정처분)신청(집행증서의 경우)

피신청인의 신청외 김○○에 대한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또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2014. 3. 3. 작성 2014년 증서 제125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위 당사자간의 귀원 2014가합 1234 제3자이의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